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958, 2024고단1876(병합)
가. 상해
나. 모욕

피 고 인 1.가.나. 정0영 (8*****-*****), ***
주거 부산
등록기준지 통영시

2.가. *** (*****-*****),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피고인 정0영】

피고인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

(삭제)

이 유

범 죄 사 실

(삭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정0영은 2024. 4. 5. 11:56경 부산 *** ***** *에 있는 ***** *층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 (여, **세)과 마주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좌측 고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

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이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고인 정0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목욕탕 탈의실에서 격하게 몸싸움을 벌였던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욕탕 탈의실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갔고,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수건 등으로 때리는 모습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손과 발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붙이지 않았고, 계속 ‘때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증인 ***은 이 법정에서 “***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현장에 가보았더니, 피해자가 하도 피고인을 때려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벽으로 누르면서 ‘**아, 0영이 때리지 마라’고 했고, 피고인은 맞다가 열이 받아서 ‘더 때려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과 몸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더 맞으려고 했

지 한 번도 손이 간 적이 없었다.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발가락에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질병명은 요추 및 좌측 고관절의 염좌, 치료기간은 14일’로 기재되어 있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임상적인 추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게 밀려서 충격을 받음(환자 고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진단을 위하여 관련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서로 머리카락을 잡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 잡고 발로 팔로 서로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여, 폭행의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등의 내용)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달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무죄 부분 삭제)

판사
